

6/14 528

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 6. 12. 판결선고	인
2001. 6. 12. 원본영수	

사건 2000가소101328 부당이득금
원고 한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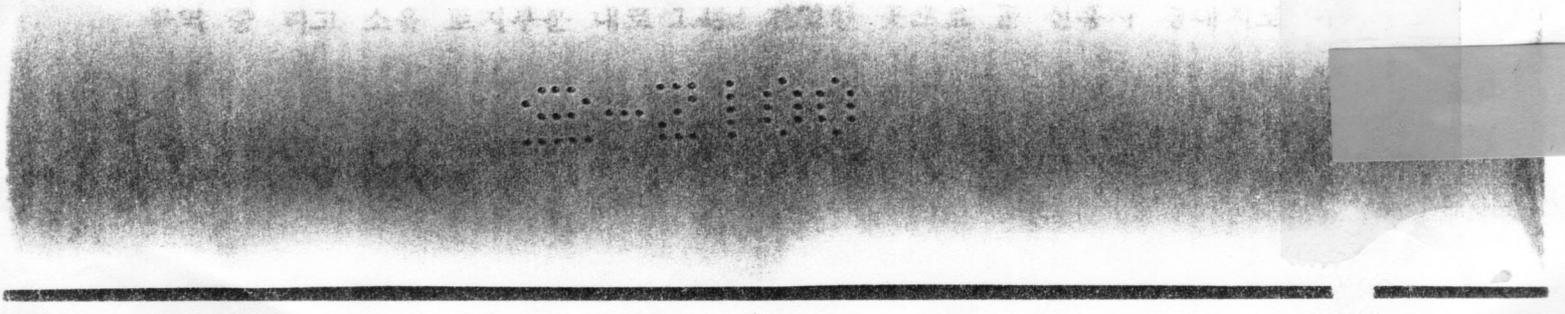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속초시 설악동 170
대표자 주지 법장(속명 이광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변론종결 2001.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그 법적 근거, 입법취지, 기본성격, 그 대가인 향유이익 등이 서로 상이한 점에서 그 통합 징수는 부당하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그 통합징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2.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58조 제2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 징수의 부당 여부에 관계 없이 위 관람료 징수가 그 자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사찰 관련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설악산 일대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강원도지정문화재로 신흥사극락보전, 신흥사경관, 신흥사보제루, 강원도문화재자료로 신흥사 일원, 신흥사부도군이 있는데, 피고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73.7km² 중 관광객이 주로 찾는 외설악 쪽으로 38.6km²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 나머지 문화재를 직접 소유 관리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고 매표소를 통과한 다음 소공원을 지나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을 관광하였는데, 위 매표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중 피고 소유 토지부분 내로 1.4km² 진입한 곳으로 곧 신흥사 경내지로 이어지고

그 인근에는 강원도문화재자료인 신흥사부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 관광구간 전부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중 피고의 소유부분 내에 속해 있다.

4. 문화재관람계약의 성립에 있어 그 관람의 의사는 외부적·객관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면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 이외에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납부한 다음 실제로 피고 소유부분 내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관광하였다면 외부적·객관적으로 그 관람의 의사가 추인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이 국가지정문화재임을 몰랐다가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추인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001. 6. 12.

판사 이원형 _____